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1. 제24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기본요금
2. 상수도 급·배수관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기본요금
3.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가. 대중음식점

   나. 이·미용업소

   다.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상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된 상수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목간에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09.2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7. 가. 수도계량기를 지난 옥내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6호>

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7호>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8호>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횟수 및 제1항제8호·제1항제9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률, 감면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9.24.>